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4. 9.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년 6월 27일, 정부

나. 회부일자 : 2024년 6월 28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7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8.26.)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2024.9.3.) 상정, 축조심사, 의결
(원안가결)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9.9.) 상정, 제안설명,
대체토론,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방송산업의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유료방송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의 방송채널사용사업에 대한 경영 및 소유 제한을 폐지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 개정안은 현행법에 규정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이하 “IPTV사업자”)가 텔레비전·라디오·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자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경영할 수 없도록 한 경영 제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 IPTV사업자의 PP 경영 제한을 폐지하려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방송산업의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점, 다른 방송사업자와의 규제 수준을 맞추어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검토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김현)

정부가 제출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의 텔레비전·라디오·데이터방송 채널사용사업에 대한 겸영 및 소유 제한을 폐지하려는 내용임.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8.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내용

체계와 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 심사보고서 붙임서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 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겸영금지 등) ① ~ ③ (생략) <u>④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u> <u>공사업자는 「방송법」 제2조</u> <u>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에</u> <u>따른 텔레비전방송채널사용사</u> <u>업 · 라디오방송채널사용사업</u> <u>및 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별</u> <u>로 각각 전체 사업자수의 5분의</u> <u>1을 초과하여 방송채널사용사</u> <u>업을 경영(겸영하거나 주식 또</u> <u>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5 이상</u> <u>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할</u> <u>수 없다.</u>	제8조(겸영금지 등) ① ~ ③ (현 행과 같음) <u><삭 제></u>